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1호
의결 년월일	2008. 9. 10 (제146회)

제안년월일 : 2008. 9. 3.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부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의 정립 및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위반 사실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기 위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정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